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권한을 주무부처로 이관〉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46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권한을 주무부처로 이관(안 제48조 등) ..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5. 19.

다. 회 부 일 : 2025. 5.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해당 주무기관의 장에게 분산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경제 정책 기획, 세제 관리, 성과 평가 등 정부 내 핵심 기능을 광범위하게 관장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와 책임성을 점검하는 경영실적 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관장 해임 건의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영실적 평가가 기획재정부에 지나치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권에 따라 평가지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평가위원 100여 명 전원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등 기획재정부가 평가 전반에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분산하고자 합니다.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안 제48조).

Ⅲ. 검토의견

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권한을 주무부처로 이관(안 제48조 등)

현 행	개 정 안
○ 경영실적평가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적·기술적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경영지침 위반으로 부실경영을 초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사상·예산상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경영실적평가 -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함 - 주무기관의 장은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적·기술적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음 - 주무기관의 장은 경영실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음 - 주무기관의 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경영지침 위반으로 부실경영을 초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사상·예산상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현행법¹⁾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관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주체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결과에 따라 기관장·상임이사의 해임건의나 해임요구, 부실경영 기관에 대한 인사·예산상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주체를 현행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각 주무부처의 장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임.

2025년 기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총 331개로, 이 중 공기업이 31개(시장형 14개, 준시장형 17개), 준정부기관이 57개(기금관리형 12개, 위탁집행형 45개), 기타공공기관이 243개 지정되어 있음.

작성·제출한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⑥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⑧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⑨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경영책임성 확보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재무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4년 기준 공기업의 자산은 750조 9,656억원, 준정부기관의 자산은 304조 966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자산(1,151조 9,426억원)의 91.6%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2024년 부채를 기준으로 공기업이 537조 4,539억원, 준정부기관이 169조 9,878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741조 4,764억원)의 9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공기업이 3조 2,142억원 흑자, 준정부기관이 6조 1,988억원 흑자를 기록한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1조 2,91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전체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역할 및 비중이 큰 상황임.

[2024년 기준 공공기관 유형별 재무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전체 공공기관(a)	공기업(b)	준정부기관(c)	기타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 비중[(b+c)/a]
자산	11,519,426	7,509,656	3,040,966	968,804	91.6
부채	7,414,764	5,374,539	1,699,878	340,347	95.4
당기순이익	81,219	32,142	61,988	△12,910	115.9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임(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제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권한이 모두 기획재정부에 일원화되어 있어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과다하다고 경영실적 평가가 기획재정부에 종속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각 주무부처의 장에게 이관하려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보다 높은 주무부처에게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을 직접 평가하는 경우 온정주의적 평가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평가에 대한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할 뿐 실제 평가는 독립적인 전문 평가단이 실시하므로 기획재정부의 권한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는 각 주무부처가 시행하고 있으므로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을 평가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기획재정부 주장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가 평가의 기준인 경영평가편람을 마련하여 배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평가단의 운영이나 평가위원의 위촉 등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개별 부처에서 시행할 경우 전체적인 기준에 따른 일관성 있는 경영실적평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동 개정안의 취지가 기재부의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을 감안할 때,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개별 부처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일임되어 있는 공운위 민간위원 등의 추천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현행법령에는 경영실적 평가의 실시 근거나 주체 등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이 관행에 따라 각 주무부처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따라 주무부처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미흡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행위의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고, 평가의 정당성이나 권위가 확보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근거 및 그 평가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 -----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삭 제>
13. ~ 17. (생략)	13. ~ 17.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 임명 목표제) ①·② (생략)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 임명 목표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u>기획재정부장관</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u>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⑤ (생략)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⑥ ----- <u>제9항</u> -----

현 행	개 정 안
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관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	-----. -----. ② 주무기관의 장----- -----. ③ 주무기관의 장----- -----. ④ -----

현 행	개 정 안
평가 기준과 방법은 <u>운영위원회</u>의 심의·의결을 거쳐 <u>기획재정부장관</u>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⑥ <u>기획재정부장관</u>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u>기획재정부장관</u>은 <u>운영위원회</u>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u>국회와 대통령</u>에게 보고한다. <신설>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u>주무기관의 장</u>----- -----. 1. ~ 7. (현행과 같음) ⑥ <u>주무기관의 장</u>----- -----. ⑦ <u>주무기관의 장</u>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u>기획재정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u>기획재정부장관</u>은 그 결과를 <u>국회와 대통령</u>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u>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u>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u>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u> 향후 경영책임성 확보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⑩ (생략)	⑨ 주무기관의 장----- ----- ----- -----<u>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절차에 따라</u>----- ----- ----- ----- --. ⑩ 주무기관의 장----- ----- ----- ----- ----- -----<u>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절차에 따라</u>----- ----- ----- ----- -----.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7